

「직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5. 11. 10. 개정 판 (시행 2025. 11. 10.) → 2026. 1. 26. 개정 판 (시행 2025. 12. 15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68/compare?from=1709&to=172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6:17:2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 <개정 2022-02-14> 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 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 3. 대학 : 신학대학, 창의융합대학, 미래융합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 <개정 2024-09-30> 4. 행정본부 :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대외국제처, 연구산학처, 재무처, 입학처 <개정 2024-09-30> 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, 박물관, 대학언론사, 인성교육수련원, 공통기기실, 실험동물연구센터, SU-FARM, ITTC국제중독센터 <개정 2024-09-30> 7. 부속교육기관 : 평생교육원,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, 유치원/어린이집, 생활교육원 <개정 2024-09-30> 8. 부설연구기관 : 융합연구센터, 부설연구소, 자율연구소, 북아태지회연구소, 정책연구소 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. <삭제 2022-02-14> 11. 교육혁신원 12. 글로벌사회혁신원 13. <삭제 2022-02-14> 14. 학술정보원 15. 캠퍼스사업단 16. 예비군대대 17. 학교기업 18. <삭제 2023-02-13> 19. <삭제 2022-02-14> 20. 대학일자리본부 21. SU인권센터 22. S/W융합교육원 23. 미래전략사업본부 24. 브랜드전략본부<개정 2025-04-07> 25. 내부감사실 26.RISE사업단 <신설 2025-01-06>	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 <개정 2022-02-14> 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 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 3. 대학 : 신학대학, 창의융합대학, 미래융합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 <개정 2024-09-30> 4. 행정본부 :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대외국제처, 연구산학처, 재무처, 입학처 <개정 2024-09-30> 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, 박물관, 대학언론사, 인성교육수련원, 공통기기실, 실험동물연구센터, SU-FARM, ITTC국제중독센터 <개정 2024-09-30> 7. 부속교육기관 : 평생교육원,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, 유치원/어린이집, 생활교육원 <개정 2024-09-30> 8. 부설연구기관 : 융합연구센터, 부설연구소, 자율연구소, 북아태지회연구소, 정책연구소 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. <삭제 2022-02-14> 11. 교육혁신원 12. 글로벌사회혁신원 13. <삭제 2022-02-14> 14. 학술정보원 15. 캠퍼스사업단 16. 예비군대대 17. 학교기업 18. <삭제 2023-02-13> 19. <삭제 2022-02-14> 20. 대학일자리본부 21. SU인권센터 22. AI융합교육원<개정 2026-01-26> 23. 미래전략사업본부 24. 브랜드전략본부<개정 2025-04-07> 25. 내부감사실 26.RISE사업단 <신설 2025-01-06>
제45조(S/W융합교육원) ① S/W융합교육원에 S/W융합교육원장을 두며, S/W 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/W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 ② S/W융합교육원에 내에 S/W융합교육센터, S/W	제45조(AI융합교육원)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,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6-01-26>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, AI

현 행	개 정 안
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, S/W중심대학사업단, <u>S/W봉사단을</u> 두며,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.	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, S/W중심대학사업단, <u>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, ITTC센터</u> 를 두며,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6-01-26)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S/W융합교육원"을 "AI융합교육원(개정 2026-01-26)"로 한다.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5조(AI융합교육원)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,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,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, S/W중심대학사업단,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, ITTC센터를 두며,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